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 및 자산형성지원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29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 신설	3
2.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확대	8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29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6.

(3) 회 부 일 : 2026. 3.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함.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 원에 달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면 의료접근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시작하면 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기간 내 안정적·장기적인 탈수급이 가능한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

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음.

이에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18조의8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한 경우에, 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2조의4(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본다.</u>

나. 검토의견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임.¹⁾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자²⁾로 구성되고,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참고로,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159만 5,452명이며 관련 예산은 8조 8,223억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에는 9조 8,400억원이 편성되었음.

1)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최근 5개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예산(지방비 포함) 현황 >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월
수급자 수	1,516,507	1,524,098	1,544,591	1,595,452	1,635,359
합 계	104,854	118,192	116,393	117,601	131,478
(증가율)	(3.0%)	(12.7%)	(△1.5%)	(1.0%)	(11.8%)
국 비	78,841	90,623	89,377	88,223	98,400
지방비	26,013	27,569	27,016	29,378	33,078

* 추경, 예비비, 이·전용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수급자 수는 연평균 기준, 2026년의 경우 2월까지의 자료임.

- 현행법 제12조의3제2항3)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인정됨.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더하여 산정.

** 자료: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개정안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4)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는 본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이므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생계보장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⁵⁾,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 의료비 지출이 높고⁶⁾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정 범위 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을 일정 기간 유지시켜줌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자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0년~2024년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 >

(연도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수급권자 수		1,526,030	1,516,525	1,522,292	1,517,041	1,559,922
장애인	수급자 수	464,989	463,051	464,096	462,438	478,718
	심한	305,041	301,794	299,455	296,685	307,616
	심하지 않은	159,670	161,100	164,554	165,697	171,084
	기타*	278	157	87	56	18

* 해당연도 수급권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결정보류·장애 미해당(호전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상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송민섭 기자,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657만원…비장애인보다 4.1배 많아”, 세계일보, 2023.2.21.

□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는 장애가 아닌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집단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에 게 의료급여의 소득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4년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8천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226만 1천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령층 역시 지속적이고 높은 의료비 부담을 지는 의료취약집단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이와 유사한 취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812)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 개정안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으로서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을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현행	개정안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 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 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 ----- ----- ----- ----- ----- 「청년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⁷⁾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10~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하고, 이를 일정 기간(3년) 유지한 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청년층의 경우 사회 진입 초기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차상위 초과자⁸⁾까지 참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기준 중위 소득구간별 가입 통장 종류 구분 >

기준 중위 소득		생계 (~32%)	의료 (~40%)	자활 근로	주거 (~48%)	교육· 차상위 (~50%)	차초과 (50%~ 100%)
통장종류							
기존 (5종)	희망키움 I('10.4~)						
	희망키움 II('14.7~)						
	내일키움('13.3~)						
	청년희망키움('18.4~)						
	청년저축('20.4~)						
신규 (3종)	희망저축 I('22.4~)						
	희망저축 II('22.4~)						
	청년내일저축('22.7~)						

* '22년부터 신규 3개 통장만 가입, 기존 5개 통장은 '24년 만기 지급 후 사업 종료(자료: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14 참고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자산형성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8) 2025년 12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57,818명 수준임.

□ 개정안은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⁹⁾에 따른 장애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이 제한적인 근로 기회와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정 기간 자산의 사용을 제한하고 만기 시에 일괄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재활비, 돌봄비용 등 예측하기 어려운 필수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가계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 해지나 지원금의 실질적 자산 축적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동 제도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자기부담 저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 및 소득 변동성이 큰 특성이 있어 제도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 접근성 및 실효성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근로·저축·유동성 제약 등의 특성이 장애인의 소득·지출 구조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저축 요건 완화, 중도 인출 허용 범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위 설정, 소득 변동 등을 반영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나아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¹⁰⁾을 고려할 때, 국가 단위 제도로 확대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사·중복 지원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 간 대상, 지원 수준 및 목적 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¹¹⁾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그 대상이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의료급여 특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¹²⁾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0) 서울특별시의 ‘이룸통장’, 인천광역시의 ‘행복씨앗통장’, 경기도의 ‘장애인 누림통장’ 등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이행급여) 도입을 통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을 지원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를 도입('15.7.)하며 수급권자의 단계적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고, 의료급여의 경우 타 급여와 달리 탈락하더라도 다양한 의료비 경감 지원제도 수혜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산형성지원의 경우, 장애인도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자), 청년에 해당할 경우 동 사업에 참여 가능하여, 동 개정안은 차상위를 초과하는 중장년 및 노년 장애인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자는 안으로서,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획예산처) 근로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 뒷받침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급여를 수급중인 고령층, 중증질환자 등 타 집단과의 형평성, 소득기준 이하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라는 제도 취지 등 감안시 신중검토가 필요함.

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및 차상위 초과 청년 장애인의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도 해당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목적, 형평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소득조건을 일괄 완화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 종류별 개요
-------------	---------------------------

□ 희망저축계좌

구분		I 유형	II 유형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40% ~ 50% 이하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정부지원	월 30만원 (정액지원)	월 10~30만원 (연차별 차등지원)
	적금금리	연 최대 5.0%	
본인 저축금		월 10만원 ~ 50만원 이하	
3년 만기 지급액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1,080만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유지 기준		①근로활동 지속, ②본인 저축금 적립, ③유지소득기준(소득상·하한) 충족	
만기 지급 조건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탈수급	①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②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누적 가입자('25.12월)		12,597 명	21,301 명
'26년 예산		184.5억 원	134.8억 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지원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지원내용	정부지원	월 30만원 (정액지원)	월 10만원 (정액지원)
	적금금리	연 최대 5.0%	
본인 저축금		월 10만원 ~ 50만원 이하	
3년 만기 지급액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720만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유지 기준		①근로활동 지속, ②본인 저축금 적립, ③유지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만기 지급 조건		①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②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누적 가입자('25.12월)		105,739명	57,818명
'26년 예산		1,851.5억 원	361.2억 원